

# 2021년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1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12건(안건번호 제2021-15009호~1538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538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현재 미개봉작인 최신 영화를 판매한 사안으로, 현재 전송 중단되어 더 이상 공중이 이용되고 있지 않아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1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275건(안건번호 제2021-372호~646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59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11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89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5개 안건(8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B, C, A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61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15009호~1538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380호

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은 현재 상영중 또는 상영예정인 영화 저작물이나 정식 공표예정인 음악저작물 등과 같이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물을 '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해 최우선 조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를 14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해당 영화의 영상물과 smi 파일을 함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해당 저작물은 2021. 3. 3. 개봉 예정인 최신 영화이므로, 심의일 현재 국내 정식 유통되고 있지 않음. 안건 상정 후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해서 삭제 조치를 요청하여 웹하드쪽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 완료한 것을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존재하지 않거나 조회할 수 없는 게시물입니다."고 팝업창이 뜬.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미개봉한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저작권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여 추가적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수, 특이사항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1-15380호

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해당 저작물은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C 위원: 지난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시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스마트폰으로는 해당 저작물 시청이 불가능하고, PC를 통하여서만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의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한 것으로 보임. 해당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유출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가장 빠르게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에 배정하였음.
- A 위원: 새로 출시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웹하드는 자신들의 보위를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시사회를 진행하면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특정한 플랫폼에서 특정한 코드로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고는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이와 같이 영상물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여짐.

- C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에서 채증한 자료를 보면, 재생된 영상의 화질이 매우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더 이상 공중에 이용되고 있지 않아 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지만, 권리자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삭제 통지를 통하여 삭제된 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없어 부결 의견임.
- A 위원: 게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본건 심의 전에 권리자가 해당 OSP에 권리 행사를 하여 이미 삭제 조치된 상황이므로 시정권고의 실익이 없어 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538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5009호~1537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61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소프트웨어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덩케르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1-15038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덩케르크'를 무료로 mkv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인 1시간 46분 38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 7. 20.에 공개한 미국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 ON '에서 1,300원에 대여, 5,000원 구매 가능함.

(방송 '설국열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174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설국열차' 1화를 mkv 파일과 함께 다국어 자막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방송 한화 전체분량인 47분 51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TNT에서 설국열차 시즌2를 2021. 1. 25.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임.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후 시청 가능함.

(음악 'Thank U'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3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Thank U'를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유노윤호(U-KNOW) - NOIR-The 2<sup>nd</sup> Mini Album'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1. 1. 18.에 발매하였으며, 2021. 2. 8. 기준 멜론 차트 948위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5009호~1537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C, B 위원: 안건번호 제2021-15009호~15379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

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5009호~1537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5380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5009호~1537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8쪽부터 3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72호~646호 275개 안전 중 159개 안전은 가결하고, 116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89개 안



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35개 안건(8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1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